

[]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
 []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
 ([] 소득자 보관용 [] 발행자 보관용)

귀속
연도

년

소득자 구분

내·외국인 구분

내국인1
외국인9

징수 의무자	① 사업자등록번호	② 법인명 또는 상호	③ 성명
	④ 주민(법인)등록번호	⑤ 소재지 또는 주소	
소득자	⑥ 성명	⑦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
	⑧ 주소		

⑨ 소득구분코드
 * 해당코드에 √ 표시

⑩ 지급연월일 ⑪ 귀속연월일 ⑫ 지급총액 ⑬ 비과세소득 ⑭ 필요경비 ⑮ 소득금액 ⑯ 세율 ⑰ 소득세 ⑱ 지방소득세 ⑲ 농어촌특별세 ⑳ 계

⑥8 비과세 기타소득, ⑥9 분리과세 기타소득, ⑥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,
 ⑥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(⑥1, ⑥3, ⑥5, ⑦8 제외), ⑥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⑥4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
 ⑥5 직무발명보상금, ⑦1 상금 및 부상 ⑦2 광업권 등 ⑦3 지역권등 ⑦4 주택입주지체상금
 ⑦5 원고료등 ⑦6 강연료등 ⑦7 종교인소득 ⑦8 사례금 ⑦9 자문료등 ⑧0 통신판매 대여소득
 ⑥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(⑥4, ⑥8, ⑥9, ⑦1 ~ ⑦7, ⑦9, ⑧0 제외)

위의 원천징수세액(수입금액)을 정히 영수(지급)합니다.

卷二十一

징수(보고)의무자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작성방법

1.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, 이자·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[별지 제23호서식(1)]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.
 2.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(법인)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.
 3. ⑫ 지급총액란은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.
 4. ⑬ 비과세소득란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(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·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)을 적습니다.
 5. ⑰란부터 ⑳란까지 종 세액이 소액 부자수(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"0"으로 적습니다.

작성방법

코드	필요 경비율	소득구분
71	80%	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(이하 "상금 및 부상"이라 함)
72	60%	광업권·어업권·산업재산권·산업정보, 산업상비밀, 상표권·영업권(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), 토사석(土砂石)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, 지하수의 개발·이용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(이하 "광업권 등"이라 함)
73	60%	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·지상권(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)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(이하 "지역권등"이라고 함)
74	80%	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(이하 "주택입주지체상금"이라고 함)
75	60%	문예·학술·미술·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(「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기간 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)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(이하 "원고료등"이라 함) 가. 원고료 나. 저작권사용료인 인세(印稅) 다. 미술·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
63	0%	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*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4호서식(6)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. 세율(15%)
76	60%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)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(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, 이하 "강연료등"이라 함) 가.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. 라디오·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·계동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.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측량사, 변리사,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(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) 라.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61	80%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*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. (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·납부)
65		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「발명진흥법」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
64	80% (90%)	개당·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·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(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)
77	80%~20%	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)로부터 받은 소득 (2천만원이하 필요경비율 80%, 2천~4천:50%, 4천~6천:30%, 6천초과 : 20%)
78	0%	사례금(분묘 이장 대가)
79	60%	「소득세법」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(이하 "자문료등"이라 함)
80	60%	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
68	0%	비과세 기타소득
69	0%	분리과세 기타소득
60	0%	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(코드 61, 63, 65, 78코드 제외) 위약금, 배상금,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
62	80%	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(코드 64, 68, 69, 71 ~ 77, 79코드 제외)

* 64코드: 필요경비 90% 적용,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 80% 적용, 다만, 서화·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% 적용하고,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(80)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
* 65코드: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원(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)

* 71, 74코드: 필요경비 80%를 적용. 다만,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* 72, 73, 75, 76, 79, 80코드: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. 다만,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
수입시기	필요경비
2018.3.31. 이전	받은 금액의 100분의 80
2018.4.1. ~ 2018.12.31.	100분의 70
2019.1.1. 이후	100분의 60

* 77코드: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. 다만,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
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(비과세소득 제외)	필요경비
2천만원 이하	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
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	1,600만원 + (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
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	2,600만원 + (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6천만원 초과	3,200만원 + (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
귀속
연도

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(발행자 보고용)

(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)

관리
번호

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

① 법인명 (상호, 성명)	② 사업자(주민) 등록번호	③ 소재지 (주소)	④ 연간 소득 인원	⑤ 연간 총지급 건수	⑥ 연간 총지급액 계	⑦ 비과세 소득	⑧ 연간 소득금액 계	⑨ 세액 집계현황		
								⑩ 소득 세	⑪ 지방 소득세	⑫ 농어 촌특별세

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

일련 번호	⑯ 소득 구분 코드	⑯ 소득자 성명 (상호)	⑯ 주민(사업자) 등록번호	⑯ 내·외 국인	⑯ 지급 연도	⑯ 지급 건수	⑯ (연간) 지급총액	⑯ 비과 세소득	⑯ 필요경 비	⑯ 소득 금액	⑯ 세율	⑯ 소득세	⑯ 지방 소득세	⑯ 농어촌 특별세	⑯ 계
1															
2															
3															
4															
5															
6															
7															
8															
9															
10															

작성방법

-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, ⑯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.
- ⑯부터 ⑯까지 중 세액이 **소액 부정수(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)**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"0"으로 적으며,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⑯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⑯(연간)지급총액 합계와, ⑯연간 소득금액계(**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**)는 소득자별 ⑯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.
- ⑯연간소득인원란은 ⑯ 소득자성명(상호)란의 인원을, ⑯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⑯ 지급건수(**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**)의 합계를 적으며,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.
- ⑯내·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"1"을 외국인의 경우 "9"를 각각 적습니다.
- ⑯(연간)지급총액란은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.
- ⑯비과세소득란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(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·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)을 적습니다.
- ⑯ 소득금액란은 ⑯(연간)지급총액에서 ⑯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.
-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(소득구분코드 64)의 경우 4쪽의 서화·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⑯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.

귀속
연도

년

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(발행자 보고용) 부표**(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)**관리
번호**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(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(주민)등록번호 :)**

일련번호	⑯ 소득 구분코드	⑯ 소득자 성명(상호)	⑯ 주민(사업자) 등록번호	⑯ 내·외 국인	⑯ 지급 연도	⑯ 지급 건수	⑯ (연간) 지급총 액	⑯ 비과 세소득	⑯ 필요경 비	⑯ 소득금 액	⑯ 세율	⑯ 소득세	⑯ 지방 소득세	⑯ 농어촌 특별세	⑯ 계
11															
12															
13															
14															
15															
16															
17															
18															
19															
20															
21															
22															
23															
24															
25															

서화 · 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

작성방법

1.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서화·꼴풀풀 양도소득(소득구분코드 64)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는 명세서입니다.

2. ⑦작풀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구분	서양화	동양화	데생	파스텔	콜라주	판화	인쇄화	석판화	골동품	기타
작품코드	1	2	3	4	5	6	7	8	9	10

3. ⑯제작연도가 불분명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